

정책연구 2015-22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기



정책연구 15-22

2015. 12.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기

##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Vanderbilt대 초빙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학술편집위원,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문헌 연보 편집위원회 위원, 국민경제학회 학술편집위원,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APO) TFP Project National Expert, 감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이사, 한국경제제도학회 학술편집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공동편집위원장이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이며 최근 저서로는 『기업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2014),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2013),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2013),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2012),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2012),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2008), 『부실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2011),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2009), 『한국기업의 투자행태』(2000),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2014) 등이 있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5년 12월 07일

1판1쇄 발행 | 2015년 12월 14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23511)

# CONTENTS

요약	5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0
Ⅱ.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변화과정	12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제	12
2. 고유업종 지정·해제 및 그 기준	16
3. 고유업종 제도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18
Ⅲ.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24
1.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제조업 내 비중변화 추이	24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DID 분석결과	27
Ⅳ.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해외사례: 인도의 경우	35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해외 사례	35
2.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36
3. 인도의 경제개혁과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	37
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39
1. 적합업종 법제화의 경제적 문제점	39
2.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통상마찰 문제	41
Ⅵ. 요약 및 결론	49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49
2. 정책적 시사점	50
참고문헌	52
부록: 연도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품목 및 해제품목	55

[표 1] 1970~90년대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관련 법규정	14
[표 2]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 업종 수 추이	17
[표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기준	17
[표 4]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기준	18
[표 5]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생산액·부가가치·출하액 비중	24
[표 6]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유형고정자산·종업원 수·사업체 수 비중	26
[표 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자료	28
[표 8]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의 생산성 효과	32
[표 9] 고유업종 해제의 생산 증대효과	33
[표 10] 고유업종 해제의 투입 요소 및 임금상승 효과분석	34
[표 11]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한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비교	36
[표 12]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37
[표 13] 인도의 소규모 기업 보호정책의 해제효과 분석결과	38
[표 14]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입법안	42
[표 15] 현행 적합업종 관련 법률안의 통상관련법 위반가능성 검토	48
[부표 1]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법 변천	55
[부표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품목과 해제품목 현황	56



# 요약

##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입법화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고유업종 제도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그것이 목적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거 실패하였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 인도의 경우에 소기업 보호 해제 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에서 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및 산출의 대폭적인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소 정책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약 1.6%~3.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출하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

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투입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1인당 급여액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동 부문의 1인당 급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정책은 요소투입량뿐만 아니라 요소가경 중 1인당 급여액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법으로 법제화하여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보호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보호제도는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중소기업고유업종 부문의 생산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로 소비자후생 감소, 중견·중소기업 성장 억제 및 적합업종 기업의 성과 악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판 중기 적합업종 제도라 할 수 있는 인도 소기업 보호제도는 축소·폐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의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도로써 자원배분의 왜곡, 생산성 향상의 억제, 기업규모분포의 왜곡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으로 즉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할 수 있다.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대기업의 이행 명령 불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원을 통한 감독이 가능한 만큼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 통상규범상의 주요 원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통상규범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여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국 간에 정해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방 유보 업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이 해당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해서 양허된 업종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에서 철수 또는 중단하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위반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생산량 저하 등 경제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고 또 통상규범에 위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계열화 업종 및 품목지정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및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있었다. 이들 3개 경쟁제한적인 제도들은 이미 다 폐지된 제도 등이다. 계열화업종 제도는 지정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는 위탁기업은 지정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수탁기업에 위탁하여야 하며 지정계열화 품목을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기업과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계열화 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의 신규진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대기업이 글로벌 소싱을 통해 부품구입을 확대하는 경우 지정계열화 제도는 대기업에게 강한 규제로 작용한다. 또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조합 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도였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경쟁제한 및 진입제한의 정도가 큰 제도였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을 저하시키는 물론 동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전면 개편된 것은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조치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부활하였고,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입법화를 통해 추진되었던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사업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 같은 분석결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정

책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형 업종을 사전적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였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이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배타적이며 강력한 보호제도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과거에 추진해 온 성장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을 고유 중소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소기업은 과거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소외되었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또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업종을 정해 중소기업이 안정된 사업활동을 하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거 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다각화가 경제력을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나 불균형 시정을 위해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지정하는 고유업종제도의 논리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대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범위의 경제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유업종 제도는 1979년에 지정되기 시작하여 2006년 말에 폐지되었다. 시장개방과 더불어 기술변화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유업종 제도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고유업종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

1) 김은자(1997) 참조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입법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해외 연구자에 의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열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기존에 일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기존의 연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 추진 이후 단순히 매출, 고용 등의 성장률이 어떠하였는가를 단순 분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의 발전된 계량경제학 분석방법론에 의하면 오류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에서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과 해제 이후의 생산액, 고용, 유형고정자산, 생산성 등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여부와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추진 여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려고 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sup>2)</sup> 특히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고유업종 제도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변화 과정과 고유업종 제도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지적한다. 제 III 장에서는 중소기업 고

---

2) Milyo and Waldfogel(1999) 참조

유업종 제도의 추진기간에 어떤 경제적 성과를 보였는지를 광업제조업 기초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DID)으로 실증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업종 또는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법제화 과정을 통해 운영한 바 있는 인도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한다. 인도는 거의 50년간 소기업 보호 정책(Small-Scale Reservation Policy)을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그 함축성을 정리한다. 제Ⅴ장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경제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 또 최근 국제통상규범에 의해서 문제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나온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결론과 함께 정책적인 시사점을 요약한다.



## II.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변화과정

###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제

[표 1]은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관련된 법률의 변천과 그 내용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79년도였다. 1961년 중소기업의 과도한 경쟁을 공정히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효과적인 경제활동의 보장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제정되었다. 1979년 이 법의 제6조의2항에 23개 품목을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규정되면서 고유업종이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982년 제2차 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고유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1978년 12월 그동안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분야에 대한 침식도 사업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sup>3)</sup> 1982년 12월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2차 개정과 함께 1979년 지정한 23개 중소기업 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시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중소기업사업조정법 2차 개정 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조정 시까지 대기업에게 사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은 1994년까지 지속되다가 폐지되었고, 이후 1995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 법 제3조는 정부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떤 특정한 품목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품목

3) 양현봉(1999) 참조

을 중소기업에게는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생산을 개시하거나 현재 생산하고 있어도 생산설비 능력 등을 확장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약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사전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인 반면,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과도한 진입이 발생하였을 때 당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조정수단이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이 두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1995년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포함되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등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표 1] 1970~90년대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관련 법규정

법률명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p>제6조의2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p> <p>제7조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자의 참여제한) ①대기업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상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p>④상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회·조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86·5·12]</p> <p>제8조 (중소기업자와 대기업자 간의 사업조정 등) ①조합은 대기업자가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당해 중소기업자의 상당수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가 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1982·12·31&gt;</p> <p>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에 관계되는 대기업자에게 통지한다.</p> <p>④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자에게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권고를 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신청을 한 조합(조합이 없을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중소기업자)과 당해 신청에 관련되는 대기업자 간에 제1항에 규정한 사태발생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li> <li>2.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li> <li>3. 제1항의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제8조의2 (일시정지 등) ①상공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가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대기업자로 하여금 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등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법률명	주요내용
	<p>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자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등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련조합 및 중앙회와 대기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p>
<p>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p>	<p>제3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①정부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②정부는 고유업종 지정의 목적을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종 및 해제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자 등의 참여제한) ①대기업자 및 대기업자와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다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당해 중소기업자(이하 "대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7.12.13, 1999.2.5).</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p> <p>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업자 등이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대기업자 등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p> <p>제6조 (사업조정 신청 등) ①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자 등의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p> <p>②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p> <p>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p> <p>제9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 등은 중소기업자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유업종의 사업</li> <li>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li> <li>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열화 품목에 관한 사업</li> <li>4. 기타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업</li> </ol>

법률명	주요내용
	제10조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지원

## 2. 고유업종 지정·해제 및 그 기준

[표 2]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정된 연도별로 관련 법률에 명기된 중소기업의 수를 정리한 것이고, [부록 2]에는 관련 연도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구체적인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1979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 중소기업특화업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수는 23개 품목이었다. 1982년 12월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2차 개정과 함께 1979년 지정한 23개 중소기업특화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같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신규지정이 계속 이루어져 1989년 23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1994년까지 지속되다가 폐지되었고, 이후 1995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1994년부터 지정해제가 확대되어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여 업종을 모두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유업종 제도를 규율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사전 차단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환경과 소비행태의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경쟁제한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저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 부족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기존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적 시장확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고유업종 제도를 단계별로 해제기로 하였다.

2000년 7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당시 88개 업종 중 43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잔여업종 45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 해제를 원칙으로 단계적 해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2001년 9월 1일자로 43개 업종을 우선 해제하였

고, 2004년 8월 7일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2004년 12월 31일 고무장갑제조업 등 8개 업종을 1차적으로 해제(잔여업종 37개 업종)하였고, 2005년 12월 31일 19개 업종을, 마지막으로 2006년 12월 31일 잔여 18개 업종 전부를 해제키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표 2]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과 해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기본적으로 광업제조업 통계 조사보고서 상의 품목분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8-digit 품목수준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해면양식업과 유창청소업을 제외하면 모두 제조업에 속하는 품목들이다.

[표 2]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 업종 수 추이

(단위: 개)

	1979	1983	1984	1989	1994	1995	1997	2001	2004	2005	2006	2007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	-	-	-	-	-	-	-
해제업종	-	-	2	17	58	45	47	43	8	19	18	0
고유업종 수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37	18	18	0

자료: 중소기업청 참조

[표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기준

	주요내용
지정 존속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형 전문업종으로서 ①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품목, ②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소규모 자본투자로 생산이 가능한 품목, ③ 다품종 생산시 품질이 우수한 품목</li> <li>-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①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한 품목이거나 대기업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수준이 손색없는 품목, ② KS규격 또는 국제공인 규격 등을 획득하여 대내외적으로 품질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li> <li>- 대기업참여 가능성이 비교적 큰 품목으로서 ①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우려되는 품목, ② 수요처가 주로 대기업인 품목으로서 자사 그룹의 수요를 독점하거나 중소기업의 수요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li> </ul>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p.182-183

또한 중소기업으로의 장기간 보호 및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예시 제도를 운영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예시제도 도입은 특정 고유업종에 대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시기를 미리 예시해 줌으로써 해당업

제로 하여금 해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1989년 고유업종에 대한 해제예시 제도 도입 이후, 1994년 9월 58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는 한편, 고유업종으로의 신규지정은 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년 45개 업종 해제, 1997년 1월에는 47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였다.

[표 4]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기준

	주요내용
해제 및 해제예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업종 지정이 장기화되어 중소기업이 그동안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품목</li> <li>- 고유업종 지정의 장기화로 중소기업 상호 간에 가격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함으로써 품질수준의 저하, 소비자 불이익의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li> <li>-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 중소기업만으로는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li> <li>-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거나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품목</li> <li>- 기타 개별 법률에 의한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의 안전이나 위생 등에 직결되는 품목</li> </ul>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pp.182~183

### 3. 고유업종 제도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 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경제효과: 기존 연구결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설문조사에 의존하거나 단순히 생산, 고용, 사업체 수의 증감을 이용한 분석에 그침으로써 최근에 엄밀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중 이윤보·이동주(2004)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던 1991~2001년 기간 중에 중소기업으로 보호된 고유업종이 활성화되기보다 제조업 대비 고유업종의 비중을 볼 때 사업 수 비중은 -1.04%, 월평균 종사자 수는 -1.70%, 생산액은 -3.94%, 부가가치는 -3.39%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고유업종 제도의 근본취지가 오늘날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는 기여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선화(2012)는 고유업종 소속 중소기업의 경우 고유업종 해제 이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1.4%p 증가한 7.2%를 기록, 평균 부가가치증가율 역시 0.9%p 증가한 4.8%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2.4%로, 부가가치증가율이 5.7%에서 1.1%로 크게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실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시행되었던 고유업종 폐지의 근거가 뚜렷하고 업종지정 해제 이후 보호를 받던 중소기업 경영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실증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적합업종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자(1997)는 중기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제품을 공급받지 않게 되어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구나 고유업종 제도는 사전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고유업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병선(1998)은 고유업종 제도의 경우 21C 경제민주화 및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유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다수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대량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마찰과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잠정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언제까지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현행의 고유업종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언젠가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주요 경제적 문제점

### (1) 고유업종 제도의 진입장벽과 비효율성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기업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고유업종 제도는 지정 당시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은 고유업종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규진출을 원하는 대

기업은 고유업종 제도가 진입장벽이 되는 반면에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유업종 제도가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sup>4)</sup>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경우에도 보호품목 내의 기존 대기업을 보호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보호품목으로 지정된 시기에 보호품목을 생산하였던 대기업은 보호품목 지정 이후에도 보호품목 생산을 허용하면서 기존 대기업을 새로운 대기업과의 경쟁심화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도 사무실 가구제품의 경우, 보호 받은 대기업은 시장지배를 계속하였지만, 소기업은 열악한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으로 중소기업들은 지대를 추구할 유인이 커진다. 즉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고유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를 하는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유업종 내에서 중소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진입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종사자들은 비용극소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생겨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로 인하여 전체 생산규모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어떤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영역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대기업은 그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비효율적인 부문에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의 온존을 초래하게 되는 정책결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sup>6)</sup>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며,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윤재(1999)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규에 상당한 정도의 시장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진입제한적인 조항들로 인하여 자원의 왜곡

---

4) 김은자(2004) 참조

5) Mohan(2002) 참조

6) Poschke(2010) 참조

배분, 소비자후생의 감소, 중소기업의 자조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입제한적인 중소기업지원 특별법 대안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미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보호·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excess support)이나 무차별적인(nonselective)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Honjo and Harada(2006)는 일본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적절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과도한 지원(excess support)은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케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다른 부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Wood(1994)는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용을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의 순효과는 제로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EU의 한 보고서도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는 경우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80-230 billion ECU<sup>7)</sup>로 EU 총 GDP의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sup>8)</sup>

## (2) 고유업종 제도와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

이윤보·이동주(2004)는 45개 고유업종 중 지난 10년간 제조업 전체 출하액 성장률 61.49%에 못 미치는 업종이 27개 업종이며 이중 5개 업종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성숙·쇠퇴 단계를 맞은 중소기업 영위업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현 시장점유율을 높이거나 시장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대다수의 고유업종영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혁신활동이 미약한 이유는 경쟁의 성격이 가격 경쟁에 있거나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정은(2014)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업종 제도가 생산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생산

7)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는 유럽 공동체의 통화단위로서 1979년 3월 13일 도입돼 1999년 1월 1일 유로화로 대체되기 전까지 회원국의 통화화폐로 기능했다.

8) European Network for SME Research(1995) 참조. 이윤재(1999) 재인용

규모를 감소시키며 중소기업체 수나 평균 생산규모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즉 기대하였던 중소기업 보호 및 성장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 고유업종 제도가 경쟁제한적인 규제로서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채 기업 간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경쟁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임해진(2004)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유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26.4%가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고 38.9%가 평균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가 0.2% 미만에 그쳤으며 투자비율이 낮은 이유로 가장 먼저 기술개발 자금 부족(37.5%), 그 다음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30.6%)을 꼽았다.<sup>9)</sup>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졸업 이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지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지도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배타적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효율적인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3) 고유업종 제도와 국제경쟁력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진입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됨으로써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 남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선정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주관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지정되거나 해제되지 않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sup>10)</sup>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유업종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원인은 품질 및 기술경쟁력 보다는 가격경쟁력의 약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고유업종의 근본 취지가 오늘날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유업종 제도의 취지 중의 하나가 일정 기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함으로써

9) 연정은(2014) 참조

10) 유진수(1997) 참조

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업종 제도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중소기업의 낮은 기술수준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대기업과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 Ⅲ.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 1.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제조업 내 비중변화 추이

### 가. 생산액·출하액·부가가치 비중

[표 5]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광공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최고 수준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산액의 경우 1990년도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8%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지속적인 비중 감소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및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비중이 고유업종 폐지 직전인 2006년도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생산액·부가가치·출하액 비중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1983	0.0708	0.2074	0.0745	0.2052	0.0710	0.2084
1984	0.1166	0.3353	0.1216	0.3343	0.1163	0.3346
1985	0.1178	0.3319	0.1298	0.3446	0.1175	0.3325
1986	0.1124	0.2998	0.1155	0.2997	0.1126	0.3012
1987	0.1056	0.2792	0.1078	0.2748	0.1052	0.2771
1988	0.1030	0.2615	0.1024	0.2420	0.1028	0.2617
1989	0.1553	0.3690	0.1432	0.3202	0.1552	0.3688
1990	0.1979	0.4626	0.1824	0.4096	0.1984	0.4650
1991	0.1738	0.3862	0.1675	0.3622	0.1739	0.3878
1992	0.1908	0.4148	0.1861	0.3886	0.1910	0.4165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1993	0.1767	0.3684	0.1686	0.3339	0.1770	0.3706
1994	0.1805	0.3765	0.1743	0.3537	0.1805	0.3765
1995	0.1052	0.2257	0.0974	0.2098	0.1060	0.2269
1996	0.1055	0.2256	0.1010	0.2130	0.1059	0.2267
1997	0.0373	0.0797	0.0353	0.0752	0.0374	0.0798
1998	0.0460	0.0985	0.0456	0.0939	0.0459	0.0990
1999	0.0478	0.1037	0.0419	0.0895	0.0479	0.1041
2000	0.0454	0.0953	0.0429	0.0850	0.0455	0.0956
2001	0.0441	0.0990	0.0420	0.0808	0.0439	0.0890
2002	0.0424	0.0829	0.0406	0.0778	0.0423	0.0829
2003	0.0421	0.0825	0.0414	0.0779	0.0422	0.0825
2004	0.0368	0.0745	0.0327	0.0649	0.0368	0.0744
2005	0.0320	0.0632	0.0273	0.0521	0.0318	0.0630
2006	0.0132	0.0264	0.0114	0.2190	0.0131	0.0261
1985~1990	0.1320	0.3340	0.1302	0.3152	0.1320	0.3344
1991~1995	0.1654	0.3543	0.1588	0.3296	0.1657	0.3557
1996~2000	0.0564	0.1206	0.0533	0.1113	0.0565	0.1210
2001~2006	0.0351	0.0714	0.0326	0.0954	0.0350	0.0697
1985~2006	0.0960	0.2185	0.0926	0.2122	0.0960	0.2185

## 나. 종업원 수 · 유형고정자산 · 사업체 수 비중 추이

[표 6]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종업원 수, 유형고정자산 및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종업원 수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체가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1995년까지 약 16~18%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1996년부터는 급격한 비중 감소를 나타내었다. 종업원 수나 사업체 수 측면에서 보아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유업종 사업체가 전체 광공업 및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6]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유형고정자산·종업원 수·사업체 수 비중

	유형고정자산		종업원 수		사업체 수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체 광공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1983	0.0795	0.2553	0.0914	0.1726	0.1064	0.1168
1984	0.1370	0.4230	0.1545	0.2858	0.1743	0.1881
1985	0.1274	0.3690	0.1546	0.2784	0.1749	0.1884
1986	0.1257	0.3580	0.1488	0.2646	0.1732	0.1850
1987	0.1194	0.3385	0.1443	0.2573	0.1733	0.1841
1988	0.0973	0.2670	0.1385	0.2415	0.1726	0.1811
1989	0.1614	0.3994	0.1766	0.2915	0.2258	0.2354
1990	0.1677	0.4296	0.2145	0.3491	0.2482	0.2568
1991	0.1485	0.3639	0.1994	0.3139	0.2397	0.2474
1992	0.1569	0.3685	0.2047	0.3111	0.2327	0.2397
1993	0.1456	0.3324	0.1931	0.2815	0.2231	0.2282
1994	0.1552	0.3533	0.1959	0.2841	0.2205	0.2242
1995	0.0931	0.2176	0.1313	0.1922	0.1507	0.1532
1996	0.0981	0.2398	0.1298	0.1911	0.1492	0.1517
1997	0.0301	0.0867	0.0545	0.0822	0.0846	0.0864
1998	0.0352	0.0933	0.0686	0.0968	0.0933	0.0946
1999	0.0360	0.0954	0.0677	0.0956	0.0933	0.0948
2000	0.0376	0.0928	0.0691	0.0936	0.0896	0.0909
2001	0.0363	0.0845	0.0654	0.0864	0.0825	0.0838
2002	0.0364	0.0800	0.0643	0.0837	0.0803	0.0813
2003	0.0393	0.0848	0.0647	0.0841	0.0764	0.0775
2004	0.0342	0.0736	0.0496	0.0650	0.0666	0.0679
2005	0.0278	0.0591	0.0393	0.0512	0.0536	0.0545
2006	0.0105	0.0223	0.0161	0.0211	0.0267	0.0271
1985~1990	0.1332	0.3603	0.1629	0.2804	0.1947	0.2051
1991~1995	0.1399	0.3271	0.1849	0.2766	0.2133	0.2185
1996~2000	0.0474	0.1216	0.0779	0.1119	0.1020	0.1037
2001~2006	0.0308	0.0674	0.0499	0.0653	0.0644	0.0654
1985~2006	0.0873	0.2186	0.1178	0.1825	0.1423	0.1470

##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DID 분석결과

### 가. 기초자료

본고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1982~2006년 기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기간과 2007년~2013년 기간 동안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생산성, 생산액 등의 기초자료를 정비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정책효과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초자료를 정비하였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1982~2013년 기간의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 자료를 정비하였다. 이 자료는 사업체 조사자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초통계자료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 자료는 품목수준 및 사업체수준에서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동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동 자료에서는 산출액, 출하액, 부가가치, 급여액, 노동자 수, 사업체 수 등 변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규정하는 일이다. 1982~1994년 기간에는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별표, 1995~2006년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명단이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서는 8-digit 품목분류 수준에서 기초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1995년 이후의 기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는 5-digit 수준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명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5-digit 수준의 산업내의 8-digit 품목분류 수준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분류되고 있어 8-digit 품목분류 수준의 고유업종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일관성 있는 고유업종 자료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sup>11)</sup>

셋째로 각종 명목자료는 한국은행의 관련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디플레이트 하였다.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의 생산액 디플레이터 및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 하였다. 또한 유형고정자산은 한국은행의 건설 및 설비자산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디플레이트 하였다.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명목변수는 디플레이

1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는 “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범위 중 위 표에 명기된 업종에 한함”이라고 밝혀 8-digit 품목 수준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정의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터를 이용하여 불변화 하였다.

넷째로 『광업·제조업 조사보고서』는 1982~2006년까지는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하였으나, 2007년 이후 부터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 분석을 위해 1985~2006년까지의 분석에서는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자료

	평균	표준편차
log(근로자 수)	2.64	0.97
log(불변출하액)	6.76	1.53
log(불변생산액)	6.77	1.53
log(불변유형고정자산)	5.62	1.85
log(불변부가가치)	6.08	1.37
log(1인당 임금)	2.12	0.76
log(불변생산액/근로자 수)	4.13	1.02
log(불변출하액/근로자 수)	4.14	1.02
log(불변부가가치/근로자 수)	3.44	0.82

## 나. 계량추정모형

이중차분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은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이다. 이 분석 모형은 통상적으로 정부정책 시행 시 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여타의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해 내기 위해 사용한다. 이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해 내는 계량적인 방법을 이분차분모형이라 한다. 즉 정책시행 후 이중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정책시행 전과 후의 변수값의 차이와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들 간의 격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중차분 모형의 경우 우선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실험그룹(treatment group)과 정책 시행여부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대조그룹(control group)으로 그 대상을 분류한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 기간을 0기, 정책이 시행되어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기간을 1기로 가정한다.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목적은 실험그룹이 해당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실제 효과만을 분리해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추진되어 2006년에 종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생산성, 성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을 비교적 일관성있게 분류할 수 있는 1985~2006년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이중차분모형을 분석하였다.<sup>12)</sup> 또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책의 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기존의 중소기업 중 정책시행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 비고유업종이 된 사업체를 실험그룹으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미해제된 중소기업체를 대조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는 특정 사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조그룹과의 성과 차이를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정책 시행 후 두 집단의 성과 차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선택편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분류에서 발생하는 선택편향의 문제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관심변수 값이 정책시행 이전에도 관찰된다면 이를 실험그룹과 대조그룹 간의 고유의 혹은 내재적인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고유한 차이를 정책 시행이후에 발생한 차이에서 제거함으로써 순수하게 정책시행에 의해서 발생한 효과를 구분해 낼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은 정책시행 여부를 제외한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분석모형이다. 자연실험에서와 같이 모든 조건이 동질적인 두 대상을 놓고 한쪽에만 변형을 주어 그 결과를 조사,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 이에 이중차분모형은 설령 두 집단 간 정책시행 여부를 제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이가 시간에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적인 차이라면 대조그룹은 비교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착안한 분석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이 같은 정책실행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sup>14)</sup> 식(1)에서  $D_{it}$ 는 각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으면 1이고 받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즉,

12)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Martin, Nataraj and Harrison(2014)의 논문에서도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13) 정준환·이지연·김형건(2013) 참조

14) 민인식·최필선, 『STATA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주)지필미디어, 2012

$$y_{it} = \alpha + \delta D_{it} + u_i + \mu_t + e_{it} \quad (1)$$

여기에서  $t = 2$ 에서  $t = 1$ 을 빼주는 1차 차분 변형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횡단면 모형이 된다.

$$\Delta y_i = \delta \Delta D_i + (\mu_2 - \mu_1) + \Delta e_i \quad (2)$$

여기에서  $\Delta D_i$ 는 실험그룹에 속하면서 1, 대조그룹에 속하면서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가 된다. 또한  $(\mu_2 - \mu_1)$ 은 상수항으로 추정되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대조그룹에 있어서(즉  $\Delta D_i = 0$ ) 종속변수의 값이 시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커졌다는 의미이다. 위 식의 OLS 추정치  $\delta$ 는 다음과 같다.

$$\hat{\delta} = \overline{\Delta y}^{treat} - \overline{\Delta y}^{control} \quad (3)$$

위 식의  $\hat{\delta}$ 을 앞의 각주14의 식(2)'에 나타난  $\hat{\beta}$ 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두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서로 다르다.<sup>15)</sup>

## 다. 분석결과

### (1) 본 연구에서의 이중차분모형 설정

우리나라는 1979년 이후 2006년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1995년 이후 정부는 고유업종 보호해제 예시 제도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일부가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1967년 이후

15) 어떤 정책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처리그룹과 대조그룹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2시점 패널데이터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모형은 두 시점 데이터를 풀링하여 횡단면 데이터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 = \alpha + \delta D_i + \gamma T_i + \beta D_i T_i + e_i \quad (1)'$$

위식에서  $D_i$ 는 실험그룹에 속하면 1이고 대조그룹에 속하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또한  $T_i$ 는  $t = 2$ 에 속하면 1이고,  $t = 1$ 에 속하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세 번째 설명변수  $D_i T_i$ 는 두 더미변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변수이고, 이의 추정계수  $\hat{\beta}$ 이 순수 정책시행 효과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상호작용 변수의 추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hat{\beta} = (\overline{y_2^{treat}} - \overline{y_1^{treat}}) - (\overline{y_2^{control}} - \overline{y_1^{control}}) \quad (2)'$$

위 추정치는 실험그룹의 시점 간 평균 차이에서 대조그룹의 시점 간 평균 차이를 빼준 값으로 이는 정책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위 식에서  $\hat{\beta}$ 을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량이라 한다. 민인식·최필선(2012)을 인용

거의 50년 기간 동안에 소기업 보호정책이 추진된 바 있고 2002년 이후 경제자유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기업 보호정책이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경우에 보호해제의 효과를 분석한 방법론을 채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해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같이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해제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체, 사업체, 산출액 등의 증감을 가지고 분석하기 보다는 해제되지 않은 사업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이다. 이 같은 방법론은 이미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Martin, Nataraj and Harrison(2014)이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적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첫 번째 관찰할 때는 보호 조치된 산업이었던 사업체가 소기업 보호조치로부터 해제된 것을 실험그룹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선  $t$ 년도에 사업체 $i$ 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중차분 모형(DID)을 가지고 시작한다.

$$y_{it} = \alpha + \beta D_{eres_{it}} + X_{it} + u_i + \mu_t + w_{it} \quad (4)$$

여기서, 종속변수  $y_{it}$ 는  $t$ 년도  $i$ 사업체의  $\log(\text{고용자 수})$ ,  $\log(\text{생산액})$ ,  $\log(\text{자본투입액})$ ,  $\log(\text{1인당 급여액})$  또한  $\log(\text{노동생산성})$ , 즉  $\log(\text{산출액}/\text{고용자 수})$ 를 나타낸다. 위의 식(1)에서  $D_{it}$ 는 각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으면 1이고 받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유업종 해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D_{eres_{it}}$ 는 사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에서 해제되지 않은 경우 0, 사업체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에서 해제된 경우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sup>16)</sup> 실증분석에서 기업 나이, 자본집약도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된 기술변화율<sup>17)</sup>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과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들 변수( $X_{it}$ )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2) 전체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추정식(4)를 이용한 사업체 수준의 분석결과는 [표 8]~[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8]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발생한 노동생산성의 변화 수준을 보여준다. 노동생산

16) 필자는 DID분석방법론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신 이진영 박사와 우광호 박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17) 남성일(1991) 참조

성은 출하액기준, 생산액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를 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소정책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약 1.6%~3.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의 생산성 효과

	log(출하액 기준 노동생산성)	log(생산액 기준 노동생산성)	log(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상수항	3.8239 (0.1031)	3.8275 (0.1032)	2.6324 (0.0838)
고유업종해제더미 (해제시=1)	0.0163 (0.0029)	0.0163 (0.0029)	0.0327 (0.0023)
기업나이	0.0052 (0.0001)	0.0050 (0.0001)	0.0044 (0.0001)
자본집약도	0.0017 (0.0000)	0.0017 (0.0000)	0.0013 (0.0000)
기술변화율	0.0024 (0.0001)	0.0025 (0.0001)	0.0035 (0.000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R <sup>2</sup>	0.3343	0.3327	0.3275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

고유업종의 효과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원래의 정책효과 달성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제도가 시행되던 기간에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등 주요 경영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와 유사하게 이선화(2014)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출하액이나 생산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sup>19)</sup> 고유업종 해제 이전과 이후의 경영분석 자료에서도 조사대상 10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고유

18) 이윤보·이동주(2004) 참조

19) 유진수(1997) 참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전반적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본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주는 산출액, 부가가치 증가액을 살펴 보았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출하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표 9] 고유업종 해제의 생산 증대효과

	log(불변출하액)	log(불변생산액)	log(불변부가가치)
상수항	6.088 (0.173)	6.0923 (0.173)	4.8991 (0.1585)
고유업종해제더미 (해제시=1)	0.110 (0.004)	0.110 (0.004)	0.1269 (0.0045)
기업나이	0.024 (0.0002)	0.024 (0.0002)	0.0235 (0.0002)
자본집약도	0.0019 (0.00001)	0.0019 (0.0000)	0.0015 (0.0000)
기술변화율	0.0034 (0.0001)	0.0035 (0.0001)	0.0045 (0.000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R <sup>2</sup>	0.1600	0.1592	0.132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가 근로자 수나 유형고정자산과 같은 투입요소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투입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1인당 급여액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동 분야의 1인당 급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정책은 요소투입량 뿐만 아니라 1인당 급여액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 전경련(2011) 및 동아일보(2011. 8. 26) 참조

[표 10] 고유업종 해제의 투입 요소 및 임금상승 효과분석

	log(근로자 수)	log(불변유형고정자산)	log(1인당 급여액)
상수항	2.264 (0.115)	4.0517 (0.1893)	0.7387 (0.0527)
고유업종해제더미 (해제시=1)	0.0943 (0.003)	0.1317 (0.0053)	0.0266 (0.0014)
기업나이	0.0191 (0.0001)	0.0436 (0.0002)	0.0041 (0.0000)
자본집약도	0.0001 (0.0001)	0.0053 (0.0000)	0.0005 (0.0000)
기술변화율	0.0009 (0.0001)	0.0007 (0.0002)	0.0003 (0.000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R <sup>2</sup>	0.1007	0.2848	0.699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위의 추정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



## IV.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해외사례: 인도의 경우<sup>21)</sup>

###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해외 사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그 정책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정책이 인도에서 추진되었다. 이 제도는 1967년 인도의 소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으나, 이 정책은 오히려 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전체의 확장을 늦추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최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고유업종 제도는 목적, 추진방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정책내용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고용창출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기업 사업을 보존·보호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유사성을 가진다. 소기업 보호 품목 대상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금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불허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확장이나 신규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인도의 경우 제조업에 국한하여 적용하였지만, 우리나라 적합업종의 경우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처음 시작 당시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나, 추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21)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기(2014)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절은 이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표 11]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한국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비교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한국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목적	- 대기업에 대한 소기업 보호·보호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내용	- 중·대규모 사업체 진입·사업 확장 금지 - 보호품목으로 사후 결정된 경우 사업 지속가능, 사업은 기존수준으로 동결 및 추가 확장 금지	- 대기업 진입·확장자제, 대기업의 사업이양 권고	- 대기업은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 금지
선정주체	- 정부	- 동반성장위원회(법률사항)	- 정부(중기청)
지정기간	- 시간별 조사를 통한 소기업 보호품목 변경	- 3년 기본, 추가 3년 연장 가능	- 고유업종지정 목적 달성 및 지정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제
대상	- 제조업 대상(서비스업, 수리업 제외)	-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 제조업
선정기준	- 보호품목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매우 자의적인 기준 적용	- 적합업종 선정의 타당성·논리적 근거 불분명	-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관련법률	- 1967년에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시작 - 1984년에 산업발전·규제법(The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of India ; IDR Act)에 법적인 기반을 마련	-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시작 - 2013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2에 적합업종 관련 조항 마련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 ; 이병기(2014)를 참조.

## 2.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1967년 47개 품목으로 시작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지속적인 증가를 해오다가 1996년 1,051개로 최고조에 이르다가 2011년 이후 20개 품목을 유지하고 있다. 소기업 보호품목은 1996년 1,051개로 가장 많은 품목 수를 기록하다가 2002년 961개 품목으로 감소한 이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개 품목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표 12] 인도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연도	보호정책 품목 수	연도	보호정책 품목 수
1967	47	1996	1,051
1970	55	2000	1,027
1976	180	2005	585
1980	833	2010	21
1984	869	2011	20

자료: Martin, Nataraj and Harrison(2014), Mohan(2002) 및 Ministry of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India) 참조

### 3. 인도의 경제개혁과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

인도는 1991년 자유화정책 추진이후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같은 소기업 품목보호 정책을 빠르게 축소·폐지시켜 오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소기업 보호제도를 급속히 축소시키는 정책(de-reservation)을 추진하여 2011년 이후 소규모 보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20개로 축소하였다. 인도 정부가 추진한 소기업 보호정책은 그 정책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경제적 성과는 열악하였기 때문에 소기업 보호정책은 완전 폐기가 마땅하다고 지적<sup>22)</sup>하고 있다.

해외의 관련 연구는 아직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한 실증 분석 두 편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Martin et al(2014)은 인도의 소기업품목 보호정책의 목적은 고용성장 및 소득재분배의 촉진이었지만,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2007년 기간 중 소기업품목이 보호 해제된 지역에서 고용성장이 더 빨랐다고 지적하였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해제 정책은 진입증가, 보호품목 지역의 신규진입자 중 산출·고용·투자를 확대하였고 또 보호해제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증가시키면서 대규모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이 소규모사업체의 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다른 기업의 고용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소득향상 목표와 관련,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는 소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평균 임금을 향상시켰으며, 결국 소기업 보호정책의 제거는 젊고 규모가 큰 사업체의 성장을 가져와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들 대규모사업체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투자를 많이 하였다. 인도에서 고용성장의 촉진은 SSI 보호정책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다고

22) Hussain(1997) 참조

지적하였다. 인도의 경우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는 생산액을 약 5.1% 증가시키고, 임금을 약 2.1% 증가시키며, 노동생산성을 약 2.9%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3] 인도의 소규모 기업 보호정책의 해제효과 분석결과

	log(노동)	log(생산액)	Log(자본)	Log(임금)	log(노동생산성)
추정치	0.008	0.051***	0.015	0.021***	0.029***
$R^2$	0.01	0.01	0.00	0.03	0.01

주: 연도더미 포함한 결과이며,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Martin(2014)

또한 Garcia-Santana et al(2014)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은 제조업 부문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을 6.8%, 전체경제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을 2% 손실을 초래하고 제조업과 전체경제 총요소생산성을 각각 2%와 0.75% 하락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보호품목이 GDP의 4%, 제조업의 14%를 차지하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정책의 제거 시에 비교적 높은 생산성 향상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도의 소기업 품목보호 정책이 제거되면 평균기업규모는 1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 V.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 1. 적합업종 법제화의 경제적 문제점

이미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실패한 고유업종제도의 법적인 부활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의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를 통해서 동 업종의 생산성, 임금, 산출 및 부가가치 수준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산업성장을 억제하고 또 산업의 효율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소정책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은 노동생산성을 약 1.6%~3.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해제정책은 출하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투입의 증가와 함께 생산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1인당 급여액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동 부문의 1인당 급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정책은 요소투입량 뿐만 아니라 요소가경 중 1인당 급여액의 상승을 가져

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기 고유업종 제도는 1979~2006년까지 시행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산업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저하 등 폐해로 인해 2006년에 폐지된 실패한 제도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제적 비중 축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던 1991~2001년 기간 중에 중소기업으로 보호된 고유업종이 활성화되기보다 사업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측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고유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따라 수입이 급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고유업종제도의 근본취지가 오늘날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선화(2012)는 고유업종 제도 시행 전후의 지정업종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업종지정 해제 이후 동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발견되지 않았다.<sup>23)</sup> 고유업종 분류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유업종 해제 이후 매출 연평균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1.4% 포인트 높아진 7.2%대를 기록하였으며 부가가치 평균 증가율 역시 0.9% 포인트 증가한 4.8%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2.4%로, 부가가치증가율이 5.7%에서 1.1%로 크게 하락한 것과는 상반된 실적이다. 현재 개정안들도 정부의 보호업종 지정 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둘째로 적합업종 대상기업의 소비자후생의 감소의 문제이다. 적합업종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 및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기존사업 철수를 강제할 경우, 해당업종의 일부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동 업종의 소비자, 대기업 종사자, 협력사 등 다른 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대기업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감소할 수 있다. 두부 산업은 규제완화 이후 종합식품 대기업이 두부 산업에 진입하면서 시장규모는 포장두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종사자의 수도 늘고, 두부제품의 품질향상과 다양화로 소비자 후생도 증진. 두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완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

---

23) 이선화(2012) 참조

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부산업의 규제완화는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약 4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셋째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존 중견기업의 사업규모를 축소시키고,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기업 범위를 중소기업법 기준인 300인 이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도 사업축소 및 진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성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로 적합업종 지정 기업의 경영성과 악화문제이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상기업의 이익률 감소하였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ROA, ROE는 각각 0.2%p, 2.7%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총고정자산증가율은 각각 5.9%p, 7.1%p 감소, 매출액증가율 0.6%p 감소하였다.<sup>25)</sup> 적합업종 실시 이후 적합업종은 성장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적합업종 제도를 추진한 2011년 전후의 분석결과, 적합업종 실시 이전에 비해 지정 이후의 기간에 64.2%의 적합업종은 노동생산성 감소, 61.7%의 적합업종은 실질생산액 증가율 감소, 53.1%의 적합업종은 사업체수 증가율 감소, 58.0%의 품목은 사업체당 생산액 증가율 감소하였다.<sup>26)</sup>

## 2.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통상마찰 문제

### 가.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79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2006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부활되었고,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산업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민간합의기구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2010. 12)하고 적합업종 지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 위임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제도 실행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동반성장위

24) 황인학(2011) 참조

25) 빈기범(2014) 참조

26) 이병기(2014) 참조

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법제화되었다.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에 의한 사업 확장에 대해 일시정지와 같은 잠정조치와 함께 사업조정 내용에 대한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대기업의 이행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조정 이행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SOC 등 주요 국책사업 입찰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와 관련된 두 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주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적합업종 위반기업에 대해 처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의 진출 금지와 사업이양 강제제도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상충될 수 있고, 한·미 FTA 등 각종 통상협정 규정과의 충돌 및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사업이양 시 손실보전을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 제정안은 대기업의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규모의 국가재정 소요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의무와 대기업 등의 영업의 자유가 대립되는 사안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화될수록 국제통상규범에 접촉될 가능성이 크다.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금지의 법제화는 대기업의 재산권 행사 또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고, 통상규범에 위배될 우려가 증대된다.

[표 14]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입법안

법률안	법안의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 대표발의, 의안번호 4681)	제6조(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분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2.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통

법률안	법안의 주요내용
	<p>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적합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 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사업이양 권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당 대기업 등에게 그 사업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li> <li>2. 기업의 분할</li> <li>3. 임원의 사임</li> <li>4. 영업의 양도</li> <li>5.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제9조(적합업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기준,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정부는 적합업종의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하는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li> <li>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li> <li>3. 기금운용수익금</li> <li>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ol> <p>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li> <li>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전</li> </ol>

법률안	법안의 주요내용
	<p>3.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재정지원</p> <p>4. 그 밖에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대표 발의, 의안번호 9618)</p>	<p>제29조(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 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대기업</p> <p>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p> <p>가. 직영점형 체인사업</p> <p>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p> <p>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p> <p>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p> <p>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p>

자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의원 대표발의)』, 2013.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4.4

## 나. 중기 적합업종 관련법의 법적 성격 상 문제점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수행업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행업무가 공무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동반성장위원회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할 수 있다.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대기업의 이행 명령 불이행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더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은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을 명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본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sup>27)</sup> 여기에 더해서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더욱 명확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와 통상규범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관 운영에 따른 당국의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GATS와 한-미 FTA 등에서는 당국의 조치를 분쟁 대상 및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GATS 제1.3조, 한-미 FTA 제11.1조 등에서는 통상분쟁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주체를 당국(authority)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8)</sup>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0조의2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등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27) 강현호·이제희(2014) 참조

28) WTO GATS 제1.3조에서 당국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현행 제도상으로 '조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판정된다. 특히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여 정부기관이 운영할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당국의 조치'로 통상규범에 위배된다. 한-미 FTA 제1.4조에서 "조치는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한-EU FTA 제7.2조에서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할 대행의 민간기관으로 당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의 자율합의와 사업조정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sup>29)</sup>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사업조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sup>30)</sup> 따라서 정부기관이 직접 적합업종 지정하고, 사업조정까지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김제남 의원 및 오영식 의원안과 같이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행정제재에 해당되어 통상규범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김제남 의원 및 오영식 의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최종적으로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신청에 따라 사업조정도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행정제재를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 된다. 특히 사업조정에 따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제재에 해당된다.

#### 다. 적합업종 제도와 통상규범 상의 문제점<sup>32)</sup>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 통상 규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통상 규범 상 기본원칙 위반 문제와 국제 투자협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OECD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경제조사보고서 2014년 한국편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전체 생산성과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키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sup>33)</sup> OECD에서는 주요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생산성과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프랜차이즈 업종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미국 주요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4)</sup>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위원장 임명 등 정부와 유관되어 있는 기관인 점을 확인하고 있다.

29) 조영재(2013) 참조

30) 정누리(2013) 참조

31) 이동근(2014) 참조

32) 이병기·정승영(2014) 참조

33) OECD Economic Survey-Korea, June 2014

34) USTR, 2015 NTE Combined

첫째로 국제 통상규범상의 주요 원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통상규범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여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국 간에 정해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TS 제16조에서는 국가 간에 완전 자유화 조치 합의가 이루어진 업종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 서비스 공급 총량 제한 등 6가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GATS 제16조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보호가 GATS 제20조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통상규범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방 유보 업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이 해당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해서 양허된 업종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대한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취약집단에 해당되기 어려워 한-EU FTA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둘째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sup>35)</sup>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문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에서 철수 또는 중단하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위반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35) 여기서 최혜국 대우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고의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란 국제법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최소대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당한 직·간접수용은 당사자 국가 정부가 정당한 보상 없이 상대국 투자자 재산을 수용(직접수용) 또는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조치(간접수용)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현행 적합업종 관련 법률안의 통상관련법 위반가능성 검토

	조치 관련	통상법 관련
김제남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기업 등이 법적으로 해당 업종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되면 적합업종 지정 업무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됨.</li> <li>-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당사국의 조치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제통상조약 당사국의 대기업 등에게 이를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li> <li>- 국제통상조약 상 해당업종에 대한 투자개방이 양허되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양허 및 시장접근의무의 위반을 초래</li> </ul>
오영식 의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에는 통상법상 당사국의 조치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에게 이양하는 것을 권고 가능</li> <li>-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에 따라 국제통상당사국 기업의 투자를 직접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제통상규범과의 상충가능성 더욱 증대</li> </ul>



## VI. 요약 및 결론

###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유사한 정책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있고 정치권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성과를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 정부가 고유업종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하였던 과거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계량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적합업종 법제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그것이 목적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인도의 경우에 소기업 보호해제 이후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이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및 생산액이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생산액과 출하액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노동생산성이 3.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정책으로 생산액은 약 11% 증가, 부가가치는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가 생산규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는 노동투입을 약 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투입은 약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로 동 부문의 1인당 급여액은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법으로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등 법제화하여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보호제도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고유업종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부문의 생산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소비자후생 감소, 중견·중소기업 성장 억제 및 적합업종 기업의 성과악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판 중기 적합업종 제도라 할 수 있는 인도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최근 축소·폐지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도로서 자원배분의 왜곡, 생산성 향상의 억제, 기업규모분포의 왜곡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으로 즉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운영 주체와 통상규범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관 운영에 따른 당국의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상생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및 공표 등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 대행의 민간기관으로 당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의 자율합의와 사업조정이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사업조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직접 적합업종 지정하고, 사업조정까지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는 국제 통상규범상의 주요 원칙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통상규범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여하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국 간에 정해진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방 유보 업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이 해당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대해서 양허된 업종의 시장접근 허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서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 주요 통상규범의 기본 원칙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위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에서 철수 또는 중단하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직·간접수용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제화되는 경우 국제통상법 상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고 또 통상규범을 위반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확대 및 정부 지정 등 법제화하는 것은 이같은 국제통상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현호·이제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7집 2014.11., pp.243-268
- 김상권,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제분석, 경제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6
- 김은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7
- 동아일보, “중기 보호망 거뒀더니 더 높이 날았다”, 2011.8.26
- 빈기범·우석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경련, 2014
- 양재성,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행정적 고찰,” 『中小企業研究』 17, 1988.12., pp.277-300
- 양재성,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행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정대학보』, 1988.2., pp.139-153
- 연정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2014.8
- 유진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국제경쟁력에 미친 효과분석,” 『중소기업연구』, 19권 1호, 1997, pp.173-190
- 외교통상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서』, 2010.9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7
- 민인식·최필선, 『STATA 고급패널데이터 분석』, (주) 지필미디어, 2012
- 이동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문위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4
- 이동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오영식의원 대표발의)”, 2013
- 이병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바람직한가?,”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4.6.9
- 이선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이병기 외,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정책연구 2012-06,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이윤보·이동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6권 제1호, 2004

- 이윤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한계점과 새로운 대안 모색”, 『사회과학논총』, 숭실대학교, 1999, pp.227-248
- 이창희,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立法調査月報』, 159, 1987.6., pp.64-84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 정누리,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권고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13
- 이병기·정승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의 문제점』 검토자료, 2014
- 정연승·권선주,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기본연구 07-05,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정준환·이지연·김형건, “알뜰주유소 전환으로 인한 자영주유소의 휘발유가격 인하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March 2013, pp.125-158
- 조병선,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1998, pp.505-522
- 조영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국제통상규범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113호, 법무부, 2013
-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999.11
-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 두부 제조업의 사례』, KERI Insight 11-08, 2011

#### [해외문헌]

- European Network for SME Research, *The European Observatory for SMEs*, Third Annual Report, 1995
- Garcia-Santana, M. and J. Pijoan-Mas, “The Reservation Laws in India and the Mis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66, Sep 2014, pp.193-209
- Hussain, A., *Report of the Expert Committee on Small Enterprises*, New Delhi, January 27, 1997.
- ; Mohan, R., “Small-Scale Industry Policy in India : A Critical Evaluation”, in Anne O. Krueger, ed, *Economic Policy Reforms and the Indian Econom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 Martin, Leslie A., Shanthi Nataraj and Ann Harrison, *In with the Big, Out with the Small: Removing Small-Scale Reservations in India*, NBER Working Paper No.19942, September 2014
- Milyo, J. and J. Waldfogel, “The Effect of Price Advertising on Prices : Evidence in the Wake

of 44 Liquormar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No.5, December 1999, pp.1081-1096

Mohan, R., “Small-Scale Industry Policy in India : A Critical Evaluation”, in Anne O. Krueger, ed, *Economic Policy Reforms and the Indian Econom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p.213-302

OECD Economic Survey-KOREA, June 2014

Poschke, M., “The Regulation of Entry and Aggregate Productivity”, *Economic Journal*, Vol.120, 2010, pp.1175-1200

Sen, A. and P. Ray, *The Ascent and Decline of Reservation in Indian Small Scale Industries: Evolution of the Policy Environment*,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Calcutta, Working Paper Series WPS No.759, February 2015

USTR, 2015 NTE Combined

Wood, W.C., “Primary Benefits, Secondary Benefits and the Evaluation of Small Business Program”,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2(3), 1994, pp.65-75

WTO Appellate Body Report, WT/DS161/AB/R, Dec.11. 2000

WTO Panel Report, WT/DS44/R, Mar.31. 1998

## 부록: 연도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품목 및 해제품목

[부표 1]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법 변천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1979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79.3.6	1976.1.1
1980		
1981		
1982		
1983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83.8.11	
1984		
1985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84.12.31	1984.2.1
1986		
1987		
1988		
1989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89.8.30	
1990		
1991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1.5.14(이전과 같음)	
1992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2.8.31	1992.1.1
1993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3.3.6(이전과 같음)	
1994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시행령: 시행 1994.12.14	
1995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5.7.1 →5-digit 시작, 위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범위중위표에 명기된 업종에 한함.	
1996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6.2.9	
1997		
1998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8.2.24	1998.2.18
1999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99.4.19	
2000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0.9.6	2000.3.1
2001		
2002		
2003		
2004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4.10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4.8.7	
2005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3.25 →별표 삭제 시행일(2007.1.1)	
2006		

[부표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품목과 해제품목 현황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1979	- 중소기업 사업조 정법 시행령: 시 행 1979.3.6	고구마전분제조업, 편직장갑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가방제조업, 골판지상지제조업, 노 트·장부 및 앨범제조업, 상업인쇄업, 세탁비누제조업, 성냥제조업, 타이어재생업, 고무장 갑제조업, 프라스토펙공기(상자를 제외한다) 제조업, 폴리프로피렌 및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업, 석회제조업, 연마제제조업, 안경제조업, 벽시계 및 탁상시계제조업, 시계케이스제 조업, 코트 및 필드 게임장비제조업, 사무 및 화학용품제조업, 우산 및 양산제조업, 봉제 완구제조업, 슬라이드파스너제조업	
1983	- 중소기업 사업조 정법 시행령: 시 행 1983.8.11	미강유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곡수제조업, 당면제조업, 두부제조업, 고구마전분제조 업, 알파전분제조업, 순방모사제조업, 혼방모사제조업, 지대봉사제조업, 타올제조업, 심 유장갑제조업, 순방모직물제조업, 혼방모직물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면이불솜제조업, 부직포(의류용 패딩 및 수세미체 한한다)제조업, 가방제조업, 핸드백제조업, 휴대용케이 스류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습강지(위생용 나프킨에 한한다)제조업, 골판지제조업, 골판 지상지제조업, 지대제조업, 노우트제조업, 장부책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상업 인쇄업, 연하장제조업, 황산일루미늄제조업, 유성페인트제조업, 수성페인트제조업, 세탁 비누제조업, 성냥제조업, 유기계면활성제(이 영 시행후 대기업이 신규로 개발한 제품을 제외한다)제조업, 계면활성소제품(세척제 및 이 영 시행후 대기업이 신규로 개발한 제품 을 제외한다)제조업, 양초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고무장갑제조업, 프라스틱 주방용품 제조업, 프라스틱용기 및 육묘상자(폴리에스테일용기 및 상자를 제외한다)제조업, 폴리에치 렌 포대제조업, 폴리에치렌 및 폴리프로피렌 필름(이축연신 폴리프로피렌 필름을 제외하 다)제조업	
1985	- 중소기업 사업조	합성수지계 끈제조업, 재생프라스틱제품제조업, 고무구두창제조업, 폴리프로피렌포대제 조업, 가물(거울판을 포함한다)제조업, 위생약품용유리제품제조업, 화강품용유리제품제조 업, 유리용도가니제조업, 생석회제조업, 소석회제조업, 공업용수경성석회제조업, 공업용 수경성석분제조업, 홀관(코아식 프레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제외한다)제조업, 콘크리트전 주제조업, 콘크리트파일제조업, 연마지석제조업, 석간재제조업, 울타리철선제조업, 쇠못 제조업, 아연말제조업, 아연화제조업, 연관제조업, 팜납제조업,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직업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직업업종 해제품목
	<p>정법 시행령: 시행 1984.12.31</p>	<p>업, 이연말제조업, 연관제조업, 이연및 일부미늘다이크스팅제조업, 금속제 식탁용품제조업, 철제학용품 책걸상제조업, 고입가스용기제조업, 일부미늘입력솔제조업, 도금업, 금속제싱크대제조업, 방열기제조업, 철망제조업, 뿔납제조업, 고체가성소다제조업, 액상고상염화이연제조업, 플라염화알루미늄제조업, 황산알루미늄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유성페인트제조업, 수성페인트제조업, 유기계면활성제제조업, 계면활성제제품제조업, 맨홀제조업, 수동식별부제조업, 툴라체인제조업, 동력발곡기제조업, 사료절단기제조업, 곡물간조기제조업, 선반제조업, 밀링기제조업, 정미기제조업, 상업용 저울제조업, 오일크리니제조업, 베이킹용 강구제조업,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제조업, 일반선박제조업, 브레이크수 및 라이닝제조업, 휴얼탱크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벽시계제조업, 탁상시계제조업, 손목시계제조업, 길기계제조업, 박용전기방식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현창제조업, 박용관아음식제조업, 박용송풍기제조업, 소형프로펠라제조업, 소조타기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선동제조업, 박용사다리제조업, 구명정제조업, 자기용 퓨우즈제조업, 이어폰제조업, 어학실습기제조업, 헤드폰제조업, 전자메기폰제조업, 인타폰제조업, 스피커전화제조업, 시단자함제조업, 피뢰탄기반제조업, 안테나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콘넥타류제조업, 플러그 및 잭제조업, E1 코어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노브제조업, 플러그부착코오드제조업, 마그네트선제조업, 용접기제조업, 무정전원정차제조업, 등안정기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기중부하개폐기제조업, 고장구간개폐기제조업, 리크로우저제조업, 아이크용접기제조업, 정류기제조업, 전기면도기제조업, 동복강선제조업, 백열등기구제조업, 순방모사제조업, 혼방모사제조업, 지대봉사제조업, 면거즈제조업, 순방모직물제조업, 혼방모직물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이불.요제조업, 침낭제조업, 배낭·수통피·안전삼피제조업, 천막제조업, 타올제조업, 양말류제조업, 섬유장갑제조업, 면이불솜제조업, 기타솜제조업, 부직포제조업, 직업장갑제조업, 가방제조업, 핸드백제조업, 휴대용케이스류제조업, 서기제조업, 실험대제조업, 책상반제조업, 책장제조업, 보관상자제조업, 학교용 책걸상제조업, 도서관이드함제조업, 박물관진열대제조업, 노트제조업, 장부책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회계장제조업, 연습장제조업, 바인더제조업, 연하장제조업, 성냥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악기제조업, 공류제조업, 낚시도구제조업, 탁구대제조업, 유아용 승용물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카니발용품제조업, 가발제조업, 가늌섬제조업, 펜대제조업, 크레용파스텔제조업, 스템프제조업, 타이프용 리본제조업, 카본지제조업, 지우개제조업, 흑판제조업, 물감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빗제조업, 화장품분침 및 패</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용업종 해제품목
1989	<p>- 중소기업 사업조 정법 시행령: 시 행 1989.8.30</p>	<p>드레조업, 슬라이드화스나제조업, 미네링제조업, 글판지상자제조업, 지대제조업, 종이컵 제조업, 습강지제조업, 글판지제조업, 판지상자제조업, 세탁비누제조업, 광택제제조업, 양초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고무장갑제조업, 폴리에치렌 및 폴리프로피렌필름 제조업, 영화비닐열수축라벨제조업, 플라스틱렌페이퍼슈트제조업, 플라스틱주방용품제조업, 플라 스틱용기 및 육묘상자제조업, 폴리프로피렌포대제조업, 폴리에치렌포대제조업, 합성수지 제관제조업, 재생플라스틱제품제조업, 거울판(거울을 포함한다)제조, 위생약품용 유리제 품제조업, 화장품용 유리제품제조업, 생석회제조업, 소석회제조업, 공업용수경성석회제조 업, 공업용수경성석분제조업, 불력·벽돌·기와제조업, 출관제조업, 콘크리트전주제조업, 콘크리트파일제조업, 유리용도가니제조업, 연마지석제조업, 미강류제조업, 옥수수기름제 조업, 서류전분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석유심지제조업, 증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보일 러제조업, 가정용보일러제조업, 버너제조업, 구멍탄용연소기제조업, 구멍탄난로제조업, 국수제조업, 당면제조업, 장류(간장·된장·고추장·춘장에 한한다)제조업, 두부제조업, 상업인쇄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포푸라제품제조업, 석간지제조업, 해면양식, 어 업, 수산물통조림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유창소업</p>	<p>강관전주(1992.9.1), 폴리에틸레피복강관(1992.9.1), 쌀통제조업(1992.9.1), 고체가성사다 제조업 (1992.9.1), 액상고상 연화아연 제조업(1992.9.1), 황 산알루미늄 제조업(1992.9.1), 유성페이튼 제조업 (1992.9.1), 수성페인트 제조업(1992.9.1), 소석회 제 조업(1992.9.1), 유기계면활성제제조업(1992.9.1), 조 제계면활성제제조업(1992.9.1), 황화소다 제조업 (1992.9.1), 부동액 제조업(1992.9.1), 브레이크 액 조업(1992.9.1),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1992.9.1), 전 동체인호이스트제조업(1992.9.1), 소화기제조업 (1992.9.1), 소방호스 및 소방용금속구 제조업 (1992.9.1), 가스미터기 제조업(1992.9.1), 구멍정 제 조업(1992.9.1), 화재경보기류 제조업(1992.9.1), 피뢰 단기반 제조업(1992.9.1), 콘넥트류 제조업(1992.9.1),</p>
1989	<p>올타리철선제조업, 쇠못제조업, 주물및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제조업, 아연말제조업, 아연및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 철제학생용책갈상제조업, 철망제조업, 땀납제조업, 맨 출제조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스테인레스용접강관제조업, 동모세관제조업, 도금업, 침 강탄산칼슘제조업, 생석회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아연화제조업, 동력탈곡기제조업, 사 료절단기제조업, 배어림용강구제조업, 방열기제조업, 수동식밸브제조업, 틀러체인제조업, 선박제조업, 밀링기제조업, 정미기제조업, 용접기제조업, 곡물건조기제조업, 상임용저울 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복식계제조업, 탁상시계제조업, 길이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안 경렌즈제조업, 자동차소화기제조업, 피난기구제조업, 축압기제조업, 박용전기방식제조업, 현창제조업, 박용송풍기제조업, 선동제조업, 박용관아음쇠제조업, 소형조타기제조업, 박 용사다리제조업, 일반선박제조업, 탱크크리닝머신제조업, 선박용문제제조업, 소형프로펠러 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부스공중전화제조업, 시내단지함제조업, 노브제조업, 이어폰제 조업, 헤드폰제조업, 전자메가폰제조업, 인타폰제조업, 마그네트선제조업, 전자기용휴 즈제조업, 아학실습기제조업, 플라그부착코오드제조업, 안테나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플라그및착제조업, 헬싱코아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동북강선제조업, 리크로우저제조</p>	<p>강관전주(1992.9.1), 폴리에틸레피복강관(1992.9.1), 쌀통제조업(1992.9.1), 고체가성사다 제조업 (1992.9.1), 액상고상 연화아연 제조업(1992.9.1), 황 산알루미늄 제조업(1992.9.1), 유성페이튼 제조업 (1992.9.1), 수성페인트 제조업(1992.9.1), 소석회 제 조업(1992.9.1), 유기계면활성제제조업(1992.9.1), 조 제계면활성제제조업(1992.9.1), 황화소다 제조업 (1992.9.1), 부동액 제조업(1992.9.1), 브레이크 액 조업(1992.9.1), 손목시계케이스 제조업(1992.9.1), 전 동체인호이스트제조업(1992.9.1), 소화기제조업 (1992.9.1), 소방호스 및 소방용금속구 제조업 (1992.9.1), 가스미터기 제조업(1992.9.1), 구멍정 제 조업(1992.9.1), 화재경보기류 제조업(1992.9.1), 피뢰 단기반 제조업(1992.9.1), 콘넥트류 제조업(1992.9.1),</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직접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직접업종 해제품목
		<p>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장구간자동차개폐기제조업, 지대용사제제조업, 배낭·수통피·안 전삽피제조업, 천막제조업, 작업장갑제조업, 이불·요제제조업, 폴리프로피렌직물포대제조업, 면거즈제조업, 세폭직물제조업, 면이불솜제조업, 타올제조업, 양말편조업, 장갑편조업, 지수제품(전자지수제품에 한한다)제조업, 실험대제조업, 비제제조업, 책장제조업, 박물관진열대제조업, 장부책제조업, 회계장제조업, 상용제조업, 스템프제조업, 흑판제조업, 악기제조업, 가발제조업, 기능선풍제조업, 핸드백제조업, 휴대용케이스류제조업, 물감제조업, 화장용분침및패드제조업, 마네킹제조업, 기타누시장비제조업, 연습장제조업, 바인더제조업, 연하장제조업, 탁구대제조업, 타이프용리본제조업, 키본지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신변모조장신품(의복장식)제조업, 노트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유아용승용물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지우개제조업, 거울판제조업, 크레용파스텔제조업, 양초제조업, 연화비닐열수축리벨제조업, 합성수지제근제조업, 이륜차용안전모 이킵 제조업, 판지상자제조업, 세탁비누제조업, 폴리에틸렌포대제조업, 발포폴리스티렌(EPS)내포장용성형제품제조업, 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피렌 필름제조업, 골판지상자제조업, 습강지제조업, 광택제제조업, 골판지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고무장갑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플라스틱렌페이퍼슈트제조업, 상업인쇄업, 크라프트지포대제조업, 발포폴리스티렌(EPS)의관및판제조업, 점착제제조업, 재생폴리스티렌로제조업, 콘크리트블럭·벽돌·기와제조업, 유리용도가니제조업, 연마지석제조업, 위생의약품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및포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미강유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제조업, 양곡도정업, 구수제조업, 당면제조업, 두부제조업, 봉합침제조업, 보청기제조업, 의약품질생성기제조업, 자기치료기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적외선조사기공식품제조업, 일회용주사기및수액세트제조업, 의료용수술기구류제조업, 석유심지제조업, 구멍탄용연소기제조업, 구멍탄난로제조업, 증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보일러제조업, 가정용보일러제조업, 버너제조업, 식건재제조업, 석공예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비유통활용(프로세스유)제조업, 바이오에너지제조업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푸라제품제조업, 유창형소금, 음반및녹음테이프제조업</p>	<p>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1992.9.1), 등안정기 제조업(1992.9.1), 아이크용접기(1992.9.1), 배선기구 제조업(1992.9.1),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 제조업(1992.9.1), 저항용접기 제조업(1992.9.1), 정류기 제조업(1992.9.1), 혼방방모직물 제조업(1992.9.1), 순방모직물 제조업(1992.9.1), 기타섬 제조업(1992.9.1), 순방모사 제조업(1992.9.1), 혼방방모사 제조업(1992.9.1), 부직포 제조업(1992.9.1), 기타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1992.9.1), 책선반 제조업(1992.9.1), 학사기제조업(1992.9.1), 보관상자 제조업(1992.9.1), 학교 책걸상 제조업(1992.9.1), 도사카이드함 제조업(1992.9.1), 공류제조업(1992.9.1), 슬라이드화스나 제조업(1992.9.1), 싱크대 제조업(1992.9.1),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피렌필름 제조업(1992.9.1), 점토기와 제조업(1992.9.1), 북층유리 제조업(1992.9.1), 타일시멘트 제조업(1992.9.1), 흡관 제조업(1992.9.1), 배합사로 제조업(1992.9.1), 김치류 제조업(1992.9.1), 장류 제조업(1992.9.1), 국산차 제조업(1992.9.1), 바이오에너지 제조업(1992.9.1), 수산물통조림 제조업(1992.9.1)</p>
1992	<p>- 중소기업 사업조 정법 시행령: 시행 1992.8.31</p>	<p>울타리철선제조업, 쇠못제조업, 주물및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제조업, 아연말제조업, 아연및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 철제학생책걸상제조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도금업, 철망제조업, 탕납제조업, 맨홀제조업, 스탠레스용접관제조업, 동모세관제조업, 강관진</p>	<p>강관전주제조업(1994.9.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제조업(1994.9.1), 쌍통제조업(1994.9.1), 고체가스소다제조업(1994.9.1), 액상고상염화아연제조업(1994.9.1),</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주제조업, 폴리테렌피복강관, 신통제조업, 생석회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이연화제조업, 침강탄산칼슘제조업, 고체가성소다제조업, 액상·고성염화아세트산, 황산일루미늄제조업, 유성페인트제조업, 수성페인트제조업, 소석회제조업, 유기계면활성제제조업, 조제계면활성제제조업, 규산소다제조업, 황화소다제조업, 부동액제조업, 브레이크액제조업, 수동식벨브제조업, 롤라체인제조업, 동력탈곡기제조업, 시료절단기제조업, 곡물간조기제조업, 산반제조업, 밀링기제조업, 정미기제조업, 상임용저울(가정용저울을 포함한다)제조업, 오일크리너(오일레라리파이어를 포함한다), 배어링용강구제조업, 복시계제조업, 탁상시계제조업, 길이계(자에 한한다)제조업, 용접기(전기용접기를 제외한다)제조업, 방열기(라디에타에 한한다)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자동차소화기제조업, 피난기구제조업, 축압기제조업, 손목시계계이스제조업, 전통체인호이스제조업, 소화기제조업, 소방호스및소방용금속구제조업, 가스미터기제조업, 박용전기방식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현창제조업, 박용관음쇄제조업, 박용송풍기제조업, 소형프로펠러제조업, 소형조타기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선등제조업, 박용사다리제조업, 일반선박제조업, 탱크크리닝머신제조업, 구명정제조업, 이어폰제조업, 아함실습기제조업, 헤드폰제조업, 전자메가폰제조업, 인터넷제조업, 부스공중전화제조업, 시내단차제조업, 플러그부착코오드제조업, 마그네트선제조업, 노브제조업, 전자기용휴즈제조업, 인테너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플러그및제조업, 철심코어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화재경보기류제조업, 피뢰탄기반제조업, 콘벡타류제조업, 동복강선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정구간자동개폐기제조업, 리크로우저제조업, 무정전원장차제조업, 등안정기제조업, 아이크용접기제조업, 배선기구제조업, 전기도관용인트및부착물제조업, 저항용접기제조업, 정류기제조업, 지대봉사제조업, 면거즈제조업, 새폭작물제조업, 이불·요제조업, 배낭·수통피·안전삼피제조업, 천막제조업, 면이불솜제조업, 타올제조업, 작업장제조업, 양말편조업, 장갑편조업, 지수제품(전자지수제품에 한한다)제조업, 순방모직물제조업, 흉방모직물제조업, 기타섬제품, 순방모사제조업, 흉방모사제조업, 부직포제조업, 기타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폴리프로피렌필름포대제조업, 가방제조업, 핸드백제조, 휴대용케이스류제조업, 실험대제조업, 물감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화장용분침및패드제조업, 마네킹제조업, 기타납시장비제조업, 비제조업, 모조장식품(의복장식)제조업, 책장제조업, 박물관전열대제조업, 노트제조업, 장부책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화계장제조업, 연습장제조업, 바인더제조업, 연하장제조업, 성냥제조업, 탁구대제조업, 유아용승용물제조업, 봉제완</p>	<p>황산일루미늄제조업(1994.9.1), 유성페인트제조업(1994.9.1), 수성페인트제조업(1994.9.1), 소석회제조업(1994.9.1), 유기계면활성제제조업(1994.9.1), 조제계면활성제제조업(1994.9.1), 규산소다제조업(1994.9.1), 황화소다제조업(1994.9.1), 부동액제조업(1994.9.1), 브레이크액제조업(1994.9.1), 손목시계이스제조업(1994.9.1), 전통체인호이스제조업(1994.9.1), 소화기제조업(1994.9.1), 소방호스 및 소방용 금속구제조업(1994.9.1), 가스미터기제조업(1994.9.1), 구명정제조업(1994.9.1), 화재경보기류제조업(1994.9.1), 피뢰탄기제조업(1994.9.1), 콘벡타류제조업(1994.9.1), 무정전기제조업(1994.9.1), 아이크용접기제조업(1994.9.1), 등안정기제조업(1994.9.1), 아아크용접기제조업(1994.9.1), 배선기구제조업(1994.9.1), 전기도관용접기제조업(1994.9.1), 저항용접기제조업(1994.9.1), 정류기제조업(1994.9.1), 순방모직물제조업(1994.9.1), 흉방모직물제조업(1994.9.1), 기타섬제품(1994.9.1), 순방모사제조업(1994.9.1), 흉방모사제조업(1994.9.1), 부직포제조업(1994.9.1), 기타침구 및 관련제품제조업(1994.9.1), 책선제조업(1994.9.1), 학서기제조업(1994.9.1), 보관상자제조업(1994.9.1), 학교 교용 책갈피제조업(1994.9.1), 도서 카이드함제조업(1994.9.1), 공류제조업(1994.9.1), 슬라이드화스나제조업(1994.9.1), 스크대제조업(1994.9.1), 폴리머지렌 및 폴리프로피렌필름제조업(1994.9.1), 사진제판제조업(1994.9.1), 점토기외제조업(1994.9.1), 복층유리제조업(1994.9.1), 타일시멘트제조업(1994.9.1), 홈런제조업(1994.9.1), 배합사로제조업(1994.9.1), 장류제조업(1994.9.1), 국산차제조업(1994.9.1), 김치류제조업</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라제조업, 버너제조업, 석간재제조업, 석공예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비윤활유(프 로세스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포푸라제품제조업, 유창청소업, 음반및녹음테이 프제조업	라벨 제조업(1995.1.1), 합성수지제 끈 제조업 (1995.1.1), 이륜차용 안전모 제조업(1995.1.1), 종이컵 제조업(1997.1.1), 판지상자 제조업(1997.1.1), 세탁비 누 제조업(1997.1.1), 폴리에치렌 포대제조업 (1995.1.1), 발포폴리스티렌 내포장용 성형제품 제조 업(1995.1.1), 폴리에치렌 및 폴리프로피렌필름 제조 업(1995.1.1), 상압 인쇄업(1997.1.1), 발포폴리스티렌 의 관 및 판 제조업(1997.1.1), 콘크리트 블록 벽돌 기 와 제조업(1995.1.1), 유리용도가니 제조업(1995.1.1), 미강유 제조업(1997.1.1), 의료용수술기구류 제조업 (1997.1.1), 석유심지 제조업(1995.1.1), 구멍탄용 연소 기 제조업(1995.1.1), 구멍탄 난로 제조업(1995.1.1), 증기보일러 제조업(1997.1.1), 난방용 보일러 제조업 (1997.1.1),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버너 제 조업(1997.1.1), 포푸라제품 제조업(1995.1.1), 유창 청 소업(1995.1.1)
1995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번호 및 기 업 간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시 행령: 시행 1995. 7.1.-6-digit 시 작, 위표의 중소 기업 고유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 류상의 범위중 위표에 명기된 업종에 한함.	울타리철선 제조업, 철망 제조업, 쇠못 제조업,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 생 알루미늄 제조업, 아연말 제조업,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용기재 조업, 스탠데스용점강관제조업, 동모세관, 도금업, 침강탄산칼슘제조업, 생석회제조업, 탄 산가스제조업, 아연화 제조업, 롤러체인 제조업, 선박체인 제조업, 밀링기제조업, 정미기 제조 업, 용접기제조업, 곡물간조기 제조업, 상업용저울제조업, 오일크리니제조업, 복식계 제조 업, 탁상시계 제조업, 길이계제조업, 안경테 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자동차소화기 제조업, 피난기구 제조업, 축압기 제조업, 박용관 이음식제조업, 소형조타기제조업, 박용사다리계 조업, 일반선박제조업, 탱크크리닝머신 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소형프로펠러제조업, 박 용전선제조업, 이어폰 제조업, 헤드폰 제조업, 전자메가폰 제조업, 인터폰제조업, 마그네 트선제조업,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 어학실습기 제조업, 플러그부착코오드 제조업, 안 테나 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플러그 및 잭제조업, 헬싱코어제조업, 리드와이어 제조 업, 리크로우저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공장구간 자동차폐기제조업, 이불, 요 제조	울타리철선 제조업(1997.1.1), 철망제조업(1997.1.1), 멤남 제조업(1997.1.1), 침강탄산칼슘제조업(1997.1.1), 롤러체인 제조업(1997.1.1), 선박제조업(1997.1.1), 밀 링기 제조업(1997.1.1), 정미기 제조업(1997.1.1), 용접 기 제조업(1997.1.1), 박용관 이음식 제조업(1997.1.1), 소형조타기 제조업(1997.1.1), 박용사다리 제조업 (1997.1.1), 일반선박 제조업(1997.1.1), 탱크크리닝 머 신 제조업(1997.1.1), 이어폰 제조업(1997.1.1), 헤드폰 제조업(1997.1.1), 전자메가폰 제조업(1997.1.1), 인터 폰 제조업(1997.1.1), 마그네트선 제조업(1997.1.1), 전 자기기용 휴즈 제조업(1997.1.1), 리크로우저 제조업 (1997.1.1), 이불요제조업(1997.1.1), 폴리프로피렌 직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업, 폴리프로피렌 직물 포대 제조업, 면거스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면이불솜 제조업, 타올 제조업, 양말 편조업, 장갑 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 물감 제조업, 화장용분침 및 패드 제조업, 마네킹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연습장 제조업, 바인더 제조업, 연하장 제조업, 탁구대 제조업, 타이프 용 리본 제조업, 카본지 제조업, 우산 제조업, 양산 제조, 신변모장신품(의복장식)제조업, 노트 제조업, 일기책 제조업, 앨범 제조업, 유아용승용물 제조업, 봉제원구 제조업, 지우개 제조업, 거울판제조업,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종이컵 제조업, 판지상자 제조업, 세탁비누 제조업, 골판지상자 제조업, 승강기제조업, 광택제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재생타이퍼 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플라스틱렌 페이퍼쉬트제조업, 섬유인쇄업,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 발포플라스틱렌(EPS)의 관 및 판제조업, 접착제, 재생프라스틱원료 제조업, 연마지석 제조업,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 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미강유 제조업, 옥수수기름 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제조업, 양곡도정업, 국수 제조업, 당면 제조업, 두부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의약품 물질생성기(이온수기)제조업, 자기치료기 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적외선아조미가공식품 제조업,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 중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 보일러제조업, 가정용 보일러제조업, 버너제조업, 석간재 제조업, 석공예 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p>	<p>물포대 제조업(1997.1.1), 가방제조업(1997.1.1), 핸드백 제조업(1997.1.1),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1997.1.1), 물감 제조업(1997.1.1), 화장용분침 및 패드 제조업(1997.1.1), 마네킹 제조업(1997.1.1), 기타 낚시제조업(1997.1.1), 연습장 제조업(1997.1.1), 바인더 제조업(1997.1.1), 연하장 제조업(1997.1.1), 탁구대 제조업(1997.1.1),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1997.1.1), 카본지 제조업(1997.1.1), 종이컵 제조업(1997.1.1), 판지상자 제조업(1997.1.1), 세탁비누 제조업(1997.1.1), 섬유인쇄업(1997.1.1), 접착제 제조업(1997.1.1), 미강유 제조업(1997.1.1), 의류수술기구류 제조업(1997.1.1), 동물약품제조업(1997.1.1), 어육연제품제조업(1997.1.1), 적외선아조미가공식품 제조업(1997.1.1),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1997.1.1), 난방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버너 제조업(1997.1.1),</p>
1996	<p>-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1996. 2.9.</p>	<p>업, 폴리프로피렌 직물 포대 제조업, 면거스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면이불솜 제조업, 타올 제조업, 양말 편조업, 장갑 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 물감 제조업, 화장용분침 및 패드 제조업, 마네킹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연습장 제조업, 바인더 제조업, 연하장 제조업, 탁구대 제조업, 타이프 용 리본 제조업, 카본지 제조업, 우산 제조업, 양산 제조, 신변모장신품(의복장식)제조업, 노트 제조업, 일기책 제조업, 앨범 제조업, 유아용승용물 제조업, 봉제원구 제조업, 지우개 제조업, 거울판제조업,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종이컵 제조업, 판지상자 제조업, 세탁비누 제조업, 골판지상자 제조업, 승강기제조업, 광택제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재생타이퍼 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플라스틱렌 페이퍼쉬트제조업, 섬유인쇄업,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 발포플라스틱렌(EPS)의 관 및 판제조업, 접착제, 재생프라스틱원료 제조업, 연마지석 제조업,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 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미강유 제조업, 옥수수기름 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제조업, 양곡도정업, 국수 제조업, 당면 제조업, 두부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의약품 물질생성기(이온수기)제조업, 자기치료기 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적외선아조미가공식품 제조업,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 중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 보일러제조업, 가정용 보일러제조업, 버너제조업, 석간재 제조업, 석공예 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p>	<p>울타리철선 제조업(1997.1.1), 철망제조업(1997.1.1), 맨남 제조업(1997.1.1), 침강탄산칼슘제조업(1997.1.1), 용접강판제조업, 동모세관, 도금업, 침강탄산칼슘제조업, 생석회 제조업, 이연화 제조업, 블러체인 제조업, 선반 제조업, 밀링기 제조업, 정미기 제조업(1997.1.1), 밀링기 제조업(1997.1.1), 정미기 제조업(1997.1.1), 응접기 제조업(1997.1.1), 박공관 이음쇠 제조업(1997.1.1), 소형스타기 제조업(1997.1.1), 박용사다리 제조업(1997.1.1), 일반선박 제조업(1997.1.1), 탱크크리닝 머신 제조업(1997.1.1), 이어폰 제조업(1997.1.1), 헤드폰 제조업(1997.1.1), 전자메가폰 제조업(1997.1.1), 인터마그네트선제조업, 아학실습기 제조업, 플라그부착코드 제조업, 안테나 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플라그 및 책제조업, 칠삼코아제조업, 리드와이어 제조업, 리크로유저제조업,</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제조업, 이불, 요 제조업, 폴리프로피렌 직물 포대 제조업, 면거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타올 제조업, 양말 편조업, 장갑 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 물감 제조업, 마네킹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연습장 제조업, 비인더 제조업, 연하장 제조업, 탁구 대 제조업,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카본지 제조업, 우산 제조업, 신변모조장신품제조업, 노트 제조업, 일기책 제조업, 앨범 제조업, 유아용승용물 제조업, 봉제완구 제조업, 지우개 제조업, 가솔린제조업, 종이컵 제조업, 판지상자 제조업, 세탁비누 제조업, 골판지상자 제조업, 승강기제조업, 광택제 제조업, 재생타이어 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 플라스틱렌 페이퍼슈트제조업, 상업 인쇄업,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 발포플라스틱렌(EPS)의 관 및 판제조업, 재생프라스틱원료 제조업, 연마지석 제조업,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 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미강유 제조업, 옥수수기름 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제조업, 양곡도정업, 곡수 제조업, 당면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의약품 물질생성기(이온수기)제조업, 자기치료기 제조업, 아육연제품제조업, 적외선조미기공식품 제조업,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 증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 보일러제조업,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 버너제조업, 석간재 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수산물생동냉장 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p>	<p>자기기용 휴즈 제조업(1997.1.1), 리크로우저 제조업(1997.1.1), 이블요제조업(1997.1.1), 폴리프로피렌 직물포대 제조업(1997.1.1), 가방제조업(1997.1.1), 핸드백 제조업(1997.1.1),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1997.1.1), 물감 제조업(1997.1.1), 화장용품침 및 패드 제조업(1997.1.1), 마네킹 제조업(1997.1.1), 기타 낚시제조업(1997.1.1), 연습장 제조업(1997.1.1), 비인더 제조업(1997.1.1), 연하장 제조업(1997.1.1), 탁구대 제조업(1997.1.1),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1997.1.1), 카본지 제조업(1997.1.1), 종이컵 제조업(1997.1.1), 판지 상자 제조업(1997.1.1), 세탁비누 제조업(1997.1.1), 상면 제조업(1997.1.1), 접착제 제조업(1997.1.1), 미강유 제조업(1997.1.1),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1997.1.1), 증기보일러 제조업(1997.1.1), 난방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버너 제조업(1997.1.1),</p>
1998	<p>-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1998. 2.24.</p>	<p>울타리철선 제조업, 철망 제조업, 엠남 제조업,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 알루미늄 제조업, 아연 및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스테인레스 용접관제조업, 동모세관, 도금업, 침강탄산칼슘제조업, 생식회제조업, 이연화 제조업, 플라세인 제조업, 선반제조업, 밀링기제조업, 정미기 제조업, 곡물건조기 제조업, 상업용 저울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복식계 제조업, 탁상시계 제조업, 길이계제조업, 안경테 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자동차소화기 제조업, 축입기 제조업, 박용관 이음쇠제조업, 소형조타기제조업, 박용사다리제조업, 일반선박제조업, 탱크크리닝머신 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이어폰 제조업, 헤드폰 제조업, 전자메가폰 제조업, 인터폰제조업, 마그네트선제조업, 어학실습기 제조업,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 안테나 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플러그 및 잭제조업, 철심코어제조업, 리드와이어 제조업, 리크로우저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제조업, 이불, 요 제조업, 폴리프로피렌 직물</p>	<p>울타리철선 제조업(1997.1.1), 철망제조업(1997.1.1), 엠남 제조업(1997.1.1), 침강탄산칼슘제조업(1997.1.1), 밀링기제조업(1997.1.1), 정미기 제조업(1997.1.1), 용접기 제조업(1997.1.1), 박용관 이음쇠 제조업(1997.1.1), 소형조타기 제조업(1997.1.1), 이어폰 제조업(1997.1.1), 헤드폰 제조업(1997.1.1), 전자메가폰 제조업(1997.1.1), 인터폰 제조업(1997.1.1), 마그네트선 제조업(1997.1.1),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1997.1.1), 리크로우저 제조업(1997.1.1),</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를 포대 제조업, 면거스 제조업, 세뿔직물 제조업, 타올 제조업, 양말 편조업, 장갑 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 물감 제조업, 마네킹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연습장 제조업, 바인더 제조업, 연하장 제조업, 탁구대 제조업,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카본지 제조업, 우산 제조업, 신변보호장신품(의복 장식)제조업, 노트 제조업, 일기책 제조업, 앨범 제조업, 유아용승용물 제조업, 봉제완구 제조업, 지우개 제조업, 가울판(가울을 포함한다)제조업, 종이컵 제조업, 판자상자 제조업, 세탁비누 제조업, 골판지상자 제조업, 습강지제조업, 광택제 제조업, 재생타이어 제조,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플라스틱렌, 페이퍼쉬트제조업, 삼엽 인쇄업,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 발포플라스틱렌(EPS)의 관 및 판제조업, 재생프라스틱원료 제조업, 연마지시 제조업,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 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미강유 제조업, 옥수수기름 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 제조업, 양곡도정업, 곡수 제조업, 당면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의약품, 물 질생성기(이온수기)제조업, 자기치료기 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적외선어조미가공식품 제조업,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 중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 보일러제조업, 가정용 보일러제조업, 버너제조업, 석간제 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쇠뿔, 탄산 가스, 용접기제조업, 피난기구 제조업, 소형프로펠러제조업,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 먼 이불솜 제조업, 화장용분칠 및 패드 제조업, 양산 제조업,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글판지 제조업, 접착제, 두부 제조업, 석공예 제조업</p>	<p>(1997.1.1), 이블오제조업(1997.1.1), 폴리프로피렌 직물포대 제조업(1997.1.1), 가방제조업(1997.1.1), 핸드백 제조업(1997.1.1),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1997.1.1), 물감 제조업(1997.1.1), 화장용분칠 및 패드 제조업(1997.1.1), 마네킹 제조업(1997.1.1), 기타 낚시제조업(1997.1.1), 연습장 제조업(1997.1.1), 바인더 제조업(1997.1.1), 연하장 제조업(1997.1.1), 탁구대 제조업(1997.1.1),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1997.1.1), 카본지 제조업(1997.1.1), 종이컵 제조업(1997.1.1), 판자상자 제조업(1997.1.1), 세탁비누 제조업(1997.1.1), 상업 인쇄업(1997.1.1), 접착제 제조업(1997.1.1), 미강유 제조업(1997.1.1),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1997.1.1), 중기보일러 제조업(1997.1.1), 난방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버너 제조업(1997.1.1), 용접기제조업(1997.1.1), 화장용 분칠 및 패드 제조업(1997.1.1),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1997.1.1), 접착제 제조업(1997.1.1),</p>
1999	<p>-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1999. 4.19.</p>	<p>울타리철선 제조업, 철망 제조업,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 알루미늄 제조업, 이연 및 이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스테레스 용접강판제조업, 동모세관, 도금업, 침강탄산칼슘제조업, 생석회제조업, 이연화 제조업, 물러체인 제조업, 선반제조업, 밀링기제조업, 정미기 제조업, 곡물건조기 제조업, 삼엽용 저울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복식계 제조업, 탁상시계 제조업, 길이계제조업, 안경테 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자동차소화기 제조업, 축입기 제조업, 방공용 이음쇠제조업, 소형 조타기제조업, 박용사다리제조업, 일반선박제조업, 탱크크리닝머신 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이어폰 제조업, 헤드폰 제조업, 전자메가폰 제조업, 인터폰제조업, 마그네트선제조업, 어학실습기 제조업, 플러그부착코오드 제조업, 안테나 제조업, 트랜</p>	<p>울타리철선 제조업(1997.1.1), 철망제조업(1997.1.1), 탱크크리닝머신제조업(1997.1.1), 침강탄산칼슘제조업(1997.1.1), 밀링기 제조업(1997.1.1), 선반제조업(1997.1.1), 정미기 제조업(1997.1.1), 용접기 제조업(1997.1.1), 방공용 이음쇠 제조업(1997.1.1), 박용사다리 제조업(1997.1.1), 일반선박 제조업(1997.1.1), 탱크크리닝 머신 제조업(1997.1.1), 이어폰 제조업(1997.1.1), 헤드폰 제조업(1997.1.1), 전자메가폰 제조업(1997.1.1), 인터</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스포머제조업, 플러그 및 액체제조업, 헬스케어제조업, 리드와이어 제조업, 리크로우저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제조업, 이불, 요 제조업, 폴리프로피렌 직물 포대 제조업, 면거스 제조업, 세목직물 제조업, 타올 제조업, 양말 편조업, 장갑 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 물감 제조업, 마네킹 제조업, 기타 누시장비 제조업, 연습장 제조업, 바인더 제조업, 연하장 제조업, 탁구대 제조업,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키본지 제조업, 우산 제조업, 신변보호장신품(의복 장식)제조업, 노트 제조업, 일기책 제조업, 앨범 제조업, 유아용품용물 제조업, 봉제원구 제조업, 지우개 제조업, 거울판(거울을 포함한다)제조업, 종이컵 제조업, 판지상자 제조업, 세탁바누 제조업, 골판지상자 제조업, 승강기제조업, 공백제 제조업, 재생타이어 제조,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플라스틱렌 페이스쉬트제조업, 상업 인쇄업, 크리프트지포대 제조업,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제조업, 재생프라스틱원료 제조업, 연마지석 제조업,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 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아스콘제조업, 미강유 제조업, 옥수수기름 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 제조업, 양곡도정업, 곡수 제조업, 당면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의약품 물 질생성기(이온수기)제조업, 자기치료기 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적오징어조미가공식품 제조업,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 증기보일러제조업, 난방용 보일러제조업, 가정용 보일러제조업, 버너제조업, 석간재 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쇠뿔, 탄산가스, 용접기제조업, 피난기구 제조업, 소형프로펠라제조업, 전자기용 후즈 제조업, 면이불솜 제조업, 화장용분침 및 패드 제조업, 양산 제조업,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접착제, 두부 제조업, 석공예 제조업</p>	<p>폰 제조업(1997.1.1), 마그네트선 제조업(1997.1.1), 전자자기용 후즈 제조업(1997.1.1), 리크로우저 제조업(1997.1.1), 이불요제제조업(1997.1.1), 폴리프로피렌 직물포대 제조업(1997.1.1), 가방제조업(1997.1.1), 핸드백 제조업(1997.1.1), 휴대용 케이스류 제조업(1997.1.1), 물감 제조업(1997.1.1), 화장용분침 및 패드 제조업(1997.1.1), 마네킹 제조업(1997.1.1), 기타 누시제조업(1997.1.1), 연습장 제조업(1997.1.1), 바인더 제조업(1997.1.1), 연하장 제조업(1997.1.1), 탁구대 제조업(1997.1.1),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1997.1.1), 카본지 제조업(1997.1.1), 종이컵 제조업(1997.1.1), 판지상자 제조업(1997.1.1), 세탁바누 제조업(1997.1.1), 상자기 제조업(1997.1.1), 접착제 제조업(1997.1.1), 미강유 제조업(1997.1.1), 의료수술기구류 제조업(1997.1.1), 증기보일러 제조업(1997.1.1), 난방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1997.1.1), 버너 제조업(1997.1.1), 용접기제조업(1997.1.1), 화장용 분침 및 패드 제조업(1997.1.1), 전자기용 후즈 제조업(1997.1.1), 접착제 제조업(1997.1.1),</p>
2000	<p>-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00. 9.6.</p>	<p>스프터제조업, 주물및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제조업, 이연말제조업, 아연및알루미늄다이캐스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스테레스용접관제조업, 동모세관제조업, 도금업, 생석회 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아연화제조업, 구름건조기제조업, 상업용저울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탁상시계제조업, 길이계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자동차소화기제조업, 피난기구제조업, 축압기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아학살습기제조업, 플러그부착코드제조업, 인테너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헬스케어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장구간자동개폐기제조업, 면거스제조업, 면이불솜제조업,</p>	<p>고압가스용기 제조업(2001.9.1), 상업용저울 제조업(2001.9.1), 탁상시계 제조업(2001.9.1), 길이계 제조업(2001.9.1), 자동차소화기 제조업(2001.9.1), 피난기구 제조업(2001.9.1), 선박용문 제조업(2001.9.1), 박용전선 제조업(2001.9.1), 아학살습기 제조업(2001.9.1),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2001.9.1), 트랜스포머 제조업(2001.9.1), 헬스케어 제조업(2001.9.1),</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염, 티올제조업, 양발편조업, 장갑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신변 보호장신품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유아용품물 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지우개제조업, 거울편제조업, 크레용파스텔제조업, 출판지상자 제조업, 승강기제조업, 광택제제조업, 출판지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크라프트지포대제조업,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재생플라스틱 원료제조업, 연마지석제조업, 위생약품용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포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전분, 양곡도정업, 곡수제조업, 당면제조업, 두부제조업, 봉합침제조업, 보청기제조업, 의료용물질생성기(이온수기)제조업, 자기치료기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일회용주사기및수액세트제조업, 석간재제조업, 석공예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비유탄유제조업, 수산물냉동생장제조업, 음반및녹음테이프제조업, 소형프로펠러, 플러그및책제조업, 세목직물제조업, 폴리스터렌페이퍼슈트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적오징어조미기공식품 제조업</p>	<p>키티아웃스위치 제조업(2001.9.1), 공장구간 계동개폐기 제조업(2001.9.1), 면거즈 제조업(2001.9.1), 면이불습 제조업(2001.9.1), 지수제품 제조업(2001.9.1), 신변모조장신품 제조업(2001.9.1), 일기책 제조업(2001.9.1), 조장신품 제조업(2001.9.1), 일기책 제조업(2001.9.1), 앨범 제조업(2001.9.1), 봉제완구 제조업(2001.9.1), 지우개 제조업(2001.9.1), 거울편 제조업(2001.9.1), 크레용파스텔 제조업(2001.9.1), 승강기 제조업(2001.9.1), 출판지 제조업(2001.9.1), 플라스틱용기 대 제조업(2001.9.1), 발포폴리스티렌의 관 및 판 제조업(2001.9.1), 연마지석 제조업(2001.9.1), 위생약품 용 유리제품 제조업(2001.9.1), 화장품용 유리제품 제조업(2001.9.1), 동물약품 제조업(2001.9.1), 서류전분 제조업(2001.9.1), 당면제조업(2001.9.1), 봉합침 제조업(2001.9.1), 보청기 제조업(2001.9.1), 의료용 물질생 성기 제조업(2001.9.1), 자기치료기 제조업(2001.9.1), 석간재 제조업(2001.9.1), 석공예 제조업(2001.9.1),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2001.9.1), 소형프로펠러 제조업(2001.9.1), 플러그 및 책 제조업(2001.9.1), 적오징 어조미기공식품 제조업(2001.9.1)</p>
2004	<p>-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04. 4.10.</p>	<p>쇠뿔제조업, 주물및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제조업, 이연말제조업, 아연및인류미늄다이캐스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스테레스용접관제조업, 동모세관제조업, 도금업, 생석회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아연화제조업, 구물간조기제조업, 산업용저울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탄산시계제조업, 길이계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자동차소화기제조업, 피난기구제조업, 축압기제조업, 선박용문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아학실습기제조업, 플러그부착코드제조업, 인테너제조업, 트랜스포머제조업, 철심코어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키티아웃스위치제조업, 공장구간계동개폐기제조업, 면거즈제조업, 면이불습제조업, 티올제조업, 양발편조업, 장갑편조업, 지수제품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신변</p>	<p>고압가스용기 제조업(2001.9.1), 산업용저울 제조업(2001.9.1), 탁상시계 제조업(2001.9.1), 길이계 제조업(2001.9.1), 자동차소화기 제조업(2001.9.1), 피난기구 제조업(2001.9.1), 선박용문 제조업(2001.9.1), 박용전선 제조업(2001.9.1), 아학실습기 제조업(2001.9.1),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2001.9.1), 트랜스 포머 제조업(2001.9.1), 철심코어 제조업(2001.9.1), 키티아웃스위치 제조업(2001.9.1), 공장구간 계동개폐기</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p>모조장식품제조업, 일기책제조업, 앨범제조업, 유아용품제조업, 유아용품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지우개제조업, 거울판제조업, 거울판제조업, 크레용파스텔제조업, 골판지상자 제조업, 습간지제조업, 광택제제조업, 골판지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고무장갑 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크라프트지포대제조업,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재생플라스틱 원료제조업, 연마지석제조업, 위생약품유리제품제조업, 화장품용유리제품제조업, 연마지 및포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동물약품제조업, 서류진분, 양극도정업, 곡수제조업, 당면제조업, 두부제조업, 봉합침제조업, 보청기제조업, 의료용품제조업, (이온수)제조업, 자기치료기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일회용주사기및수액세트제조업, 석간제제조업, 석공예제조업, 전기절연유제조업, 기타비유탄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음반및녹음테이프제조업, 소형프로펠러, 플라스틱제조업, 세척용품제조업, 폴리스티렌페이퍼쉬트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적오징어조미기공식품 제조업</p>	<p>제조업(2001.9.1), 먼거스 제조업(2001.9.1), 면이불습 제조업(2001.9.1), 지수제품 제조업(2001.9.1), 신변모조장식품 제조업(2001.9.1), 일기책 제조업(2001.9.1), 앨범 제조업(2001.9.1), 봉제완구 제조업(2001.9.1), 지우개 제조업(2001.9.1), 거울판 제조업(2001.9.1), 크레용파스텔 제조업(2001.9.1), 습간지 제조업(2001.9.1), 골판지 제조업(2001.9.1),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2001.9.1), 발포폴리스티렌의 관 및 판 제조업(2001.9.1), 연마지석 제조업(2001.9.1),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제조업(2001.9.1), 화장품용 유리제품 제조업(2001.9.1), 동물약품 제조업(2001.9.1), 서류진분 제조업(2001.9.1), 당면제조업(2001.9.1), 봉합침 제조업(2001.9.1), 보청기 제조업(2001.9.1), 의료용 물질생성기 제조업(2001.9.1), 자기치료기 제조업(2001.9.1), 석간제 제조업(2001.9.1), 적오징어 제조업(2001.9.1),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2001.9.1), 소형프로펠러 제조업(2001.9.1), 플라스틱 제조업(2001.9.1), 적오징어조미기공식품 제조업(2001.9.1)</p>
<p>-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04. 8. 7.</p>	<p>쇠뿔제조업, 주물및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제조업, 스텔레스용접관 제조업, 동모세관, 도금업, 생석회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아연화제조업, 곡물건조기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안경렌즈 제조업, 축압기제조업, 안테나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세척용품제조업, 타올제조업, 양말제조업, 장갑제조업, 우산제조업, 양산제조업, 노트제조업, 유아용품물제조업, 거울판제조업, 골판지상자제조업, 광택제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고무장갑제조업, 플라스틱용기, 플라스틱렌페이퍼쉬트제조업, 재생플라스틱원료제조업, 연마지및포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동물약품 제조업, 양극도정업, 곡수제조업, 두부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일회용주사기및수액세트제조업, 전기절연유 제조업, 기타비유탄유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품제조업, 음반및녹음테이프제조업, 소형프로펠러, 플라스틱제조업, 세척용품제조업, 폴리스티렌페이퍼쉬트제조업, 아스콘제조업, 적오징어조미기공식품 제조업</p>	<p>쇠뿔제조업(2005.12.31), 주물및다이캐스팅용재생알루미늄제조업(2005.12.31), 아연말제조업(2006.12.31), 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2006.12.31), 아연말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2006.12.31), 스텔레스용접관 제조업(2005.12.31), 동모세관(2004.12.31), 도금업(2006.12.31), 생석회제조업(2006.12.31), 탄산가스 제조업(2006.12.31), 아연화제조업(2006.12.31), 곡물건조기제조업(2006.12.31), 오일크리너제조업(2006.12.31), 안경테제조업(2006.12.31), 안경렌즈 제조업(2006.12.31), 축압기제조업(2006.12.31), 양말제조업(2006.12.31), 장갑제조업(2006.12.31), 우산제조업(2006.12.31), 노트제조업(2006.12.31), 유아용품물제조업(2006.12.31), 골판지상자제조업(2006.12.31), 광택제제조업(2006.12.31), 재생타이어제조업(2006.12.31), 고무장갑제조업(2006.12.31), 플라스틱용기제조업(2006.12.31), 플라스틱렌즈제조업(2006.12.31), 아스콘 제조업(2006.12.31), 옥수수기름제조업(2006.12.31), 동물약품 제조업(2006.12.31), 양극도정업(2006.12.31), 곡수제조업(2006.12.31), 두부제조업(2006.12.31), 어육연제품제조업(2006.12.31), 일회용주사기및수액세트제조업(2006.12.31), 전기절연유 제조업(2006.12.31), 기타비유탄유제조업(2006.12.31), 수산물냉동냉장제품제조업(2006.12.31), 음반및녹음테이프제조업(2006.12.31), 소형프로펠러 제조업(2006.12.31), 플라스틱 제조업(2006.12.31), 적오징어조미기공식품 제조업(2006.12.31)</p>	

연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품목
		물냉동냉장제조업	제조업(2005.12.31), 축압기제조업(2004.12.31), 인테 나제조업(2005.12.31), 리드와이어제조업(2006.12.31), 세폭직물제조업(2006.12.31), 타올제조업(2004.12.31), 양말편조업(2006.12.31), 장갑편조업(2005.12.31), 우산제조업(2006.12.31), 양산제조업(2006.12.31), 노트제조업(2005.12.31), 유아용품물 제조업(2005.12.31), 거울편제조업(2004.12.31), 골판 지상지제조업(2006.12.31), 광택제제조업(2004.12.31), 재생타이어제조업(2005.12.31), 고무장갑제조업(2004.12.31), 플라스틱용기(2005.12.31), 폴리스티렌페이퍼쉬트제조업(2004.12.31), 재생플라스 틱원료제조업(2005.12.31), 연마지뿔표제조업(2004.12.31), 아스콘 제 조업(2006.12.31), 옥수수기름제조업(2006.12.31), 동물약품 제조업(2005.12.31), 양극도정업(2005.12.31), 국수제조업(2005.12.31), 두부제조업(2005.12.31), 어육연제품제조업(2005.12.31), 일회용주사기및수액세트제조업(2005.12.31), 전기절연유제조업(2005.12.31.), 기타 비운활유제조업(2006.12.31),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2005.12.31)
2005	-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05. 3.25→별표 삭제 시행일(2007. 1.1)		